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1. 남북/북미 대화, 동향과 기대
2. 농업부문 남북 협력의 준비
3. 제재 완화·해제 국면의 농업협력
4.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협력
5. 북한 체제전환 이후 농업협력 전망
6. 요약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남북/북미 대화, 동향과 기대

북한 비핵화 대화의 이해

□ 대화의 핵심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CVID) 약속과 이행임

- ◆ 동결 ⇨ 핵무기·물질 폐기 ⇨ 원상 복구 ⇨ 핵개발 프로그램 제거
- ※ 기술적으로 핵무기·물질 폐기까지는 2년, 프로그램 제거까지는 9년 소요

□ 비핵화는 ‘장애물이 많은 신고·폐기·검증 과정’이며 ‘우호적 환경’이 필요

- ※ 핵물리학자 Siegfried S. Hecker 교수

□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음

- ◆ 정치: 종전,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일련의 평화정착 프로세스
- ◆ 경제: 제재 완화와 해제 (+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 ※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불만 피력(노동신문, 9.30)

1 남북/북미 대화, 동향과 기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 정상회담 합의서 - 남·북·미 3자의 의견 접근

- ◆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
- ◆ 비핵화 관련 실무회담을 계속 열고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약속

〈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서의 목표와 약속 〉

구 분	목 표	이행 조치 · 노력 · 약속
4.27 남북합의서	중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인도적, 사회·문화적 조치 연락사무소 개설,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기존(10.4선언) 합의사항 이행
6.12 북미합의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 평화체제 노력, 실무회담 지속 개최
9.19 남북합의서	평화·번영 추구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실천적 조치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1 남북/북미 대화, 동향과 기대

현실적 장애와 기대

□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

- ◆ ‘완전한 비핵화(CVID)’의 개념에 대해 양측 사이에 이견
- ◆ ‘일괄 타결’과 ‘순차적 합의와 동시 행동’이라는 접근방식에 대한 이견
- ◆ ‘제재 해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

□ 향후 평화시대 전개에 관한 기대

- ◆ 정치적 상황의 변화 :

대화 진전 ⇨ 최종 합의(비핵화 입구) ⇨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 이행 ⇨
이행 완료(비핵화 출구) ⇨ 평화체제

- ◆ 경제적 행동의 변화 :

대북 제재 완화·해제 ⇨ 대북 경제협력 재개 ⇨ 북한의 개혁·개방 ⇨

대북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 ⇨ 북한 체제전환 이행과 완료 ⇨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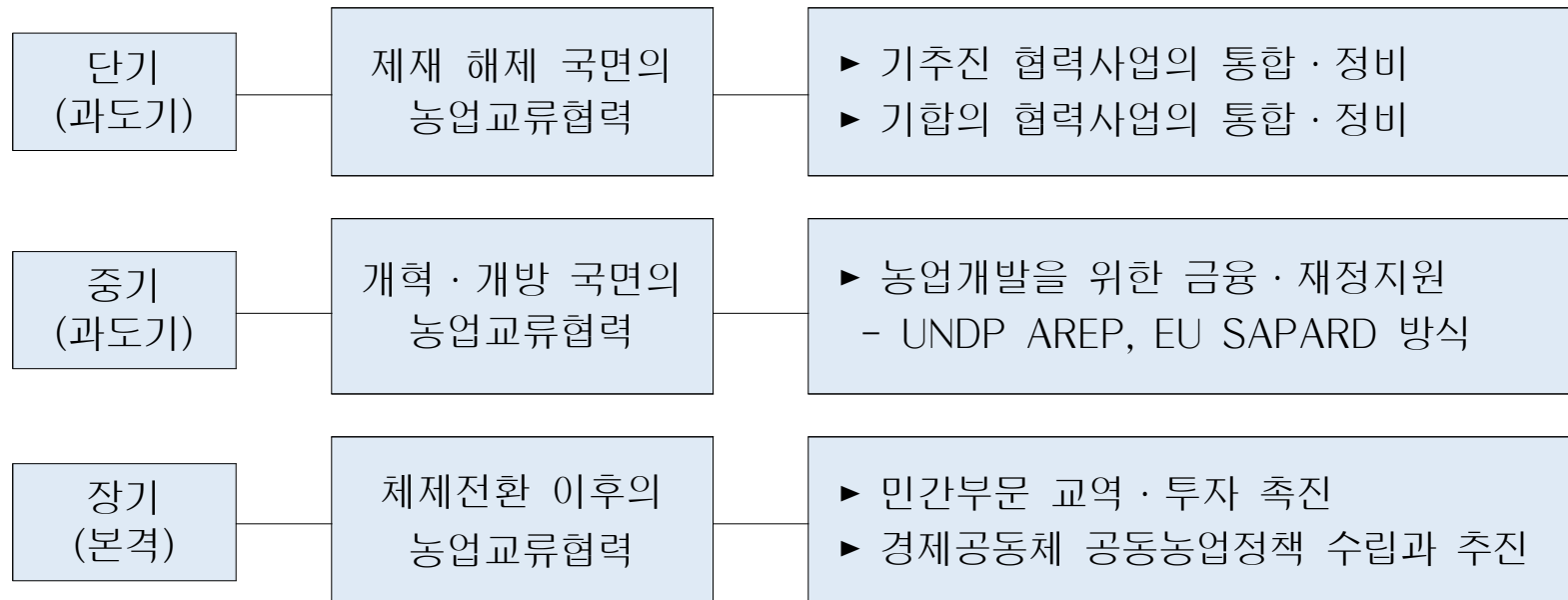
2 농업부문 남북 협력의 준비

농업협력의 단계적 · 차별적 접근

□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함

- ◆ 대북제재 완화 · 해제의 시작과,
- ◆ 북한의 본격 개혁 · 개방 착수가 대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개연성

□ 대북제재 해제 국면과 북한의 개혁 · 개방 국면을 분리해 접근



2 농업부문 남북 협력의 준비

왜 단계적 · 차별적 접근이어야 하나?

□ 대북 제재의 역사 깊고 광범위

◆ 제재 완화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

< 국제사회의 주요 대북 제재 및 교역제한 근거 >

구분	주요 대북제재
UN안보리 결의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94호(2013) 2270호,2321호(2016), 2356호,2371호,2375호,2397호(2017)
한국의 법규·조치	대외무역법(198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5.24조치(2010)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중단 조치(2008),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2016.2)
미국의 법규	적성국교역법(TWEA,1917), 수출입은행법(EIBA,1945), 수출통제법(ECA,1949) 무역협정연장법(TAEA,1951), 원자력법(AEA,1954), 대외원조법(FAA,1961) 무기수출통제법(AECA,1968), 국가비상법(NEA,1976),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 핵비확산법(NNA,1978), 수출관리법(EAA,1979), 종교자유법(IRFA,1998) 인신매매보호법(TVPA,2000), 애국법(PATRIOT Act,2001) ※ 이상, 북한에 적용되는 포괄적 제재 법규 북한인권법(NKHRA,2004), 이란 · 북한 · 시리아 비확산법(INKSNA,2006)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2016), 대적성국제재법(CAATSA,2017) ※ 이상, 북한을 특정한 제재 법규

2 농업부문 남북 협력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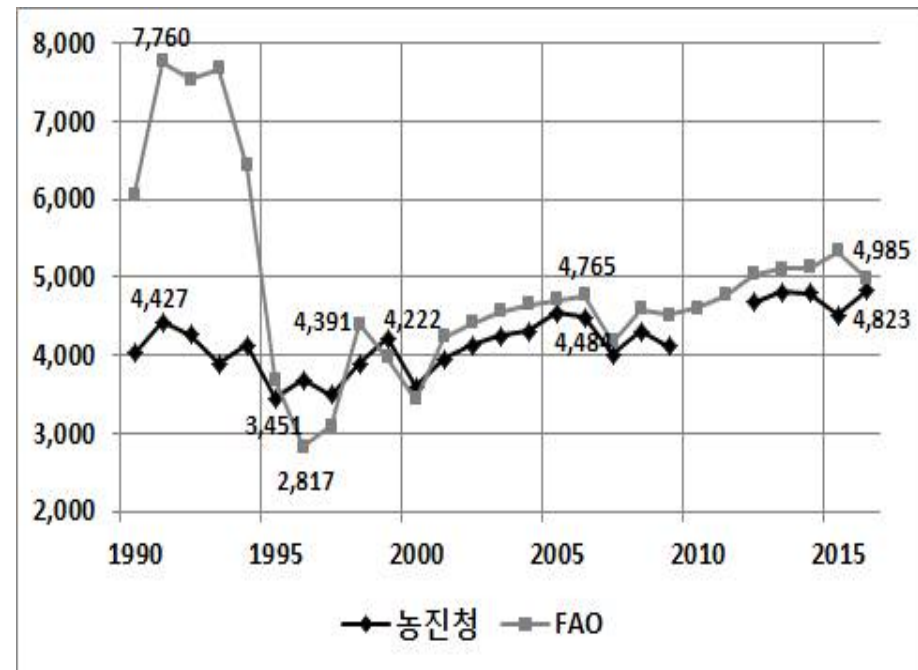
□ 북한 경제·농업개혁의 어려움

- ◆ 경제개혁(경제민주화)은 정치개혁(정치민주화)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
- ◆ 안전장치와 보장이 필요 - 충분한 여건 조성까지 기다릴 개연성

< 과거 북한 농업의 개혁 조치 >

연도		주요 내용
1996	새로운 분조관리제	생산동기 강화 탈중앙집권화 상업화 진척
2002	7.1경제 개선조치	곡물가격 현실화 시장 유통 허용
2012	포전담당조 도입	협동농장 권한 강화 생산활동 독립성 확대 시장 유통 허용

<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정곡, 1990-2016) >



3 제재 완화·해제 국면의 농업협력

제재 완화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 남북한의 준비 상황에 변화가 없어, 협력 환경은 현 수준과 같을 것으로 전망
-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재정비하여 추진

< 과거 추진했거나 합의한 농업협력사업 >

구분	2000년대 추진한 농업협력사업	2000년대 합의한 농업협력사업
협동농장 협력	금강산,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지원 영농기술 지원
종자분야 협력	옥수수 신품종 개발 지원 씨감자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확충 지원	현대적 종자생산시설 지원 종자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농업과학기술 협력	북한 농업과학원과 공동연구 추진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움」 정례 개최(14차)	우량 유전자원 교환 및 공동연구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육종 및 재배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예보, IPM 기술 협력 검역·방역 기술 협력
개별 농업협력	농림축산분야에서 다양한 개별협력 추진	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 협력
산림분야 협력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사업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투자 협력	고성온실농장 투자협력사업	수출·투자확대 위한 협력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협력)

3 제재 완화·해제 국면의 농업협력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투자를 통한 농산물·농자재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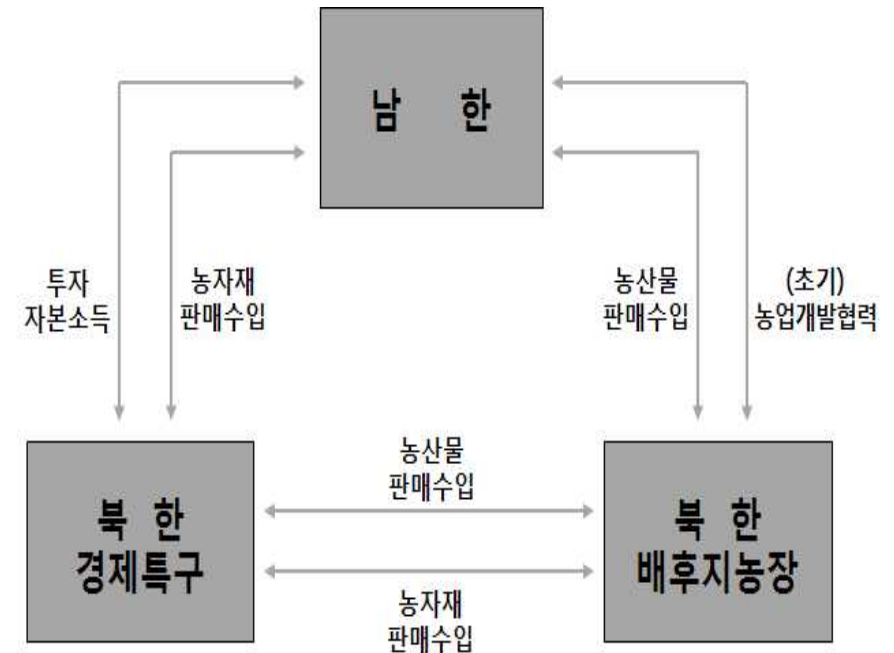
□ 개요

- ◆ 남북 농업협력 인큐베이터:
공동영농단지 조성, 농업생산기술 교류, 교역 및 경험

□ 공동영농단지 협력사업에 기대하는 파급효과

- ◆ 영농단지 개발협력 ⇨ 농산물 생산
⇨ 교역 ⇨ 상호 이익 창출
- ◆ 영농단지 개발협력 ⇨ 생산기술·인적교류
⇨ 역량강화·북한농업 발전
- ◆ 영농단지 개발협력 ⇨ 지속적인 성과 창출
⇨ 지속가능한 협력 확산

< ‘협력농장-경제특구-남한’ 연계 동영농단지 협력 개념 >



3 제재 완화·해제 국면의 농업협력

농업분야 KSP사업 추진

□ 농업과학기술 교류 프로그램

- ◆ 농업과학원과 산하 연구소 간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기자재지원 추진
- ◆ 농업협력 현장의 생산기술 교류

□ 농과대학 및 전공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 ◆ 커리큘럼과 교육기자재 지원, 장학생의 선발과 유학 지원 추진
- ※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남북 대학 간 교류사업으로 추진

□ 북측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 ◆ 제3국을 매개로 추진하다가 남북 간 직접 교류사업으로 발전
- ◆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농업경제·정책 분야로 발전

4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협력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 사적 재산권 확대, 시장 지향적 제도 도입, 통계·행정·사법의 신뢰도 향상 등 개혁·개방 진척을 전제
- 북한 주도의 시장 지향적 농업개발 이행을 종합적으로 지원
 - ◆ 농업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
- 북한 농업개발 지원 프로그램
 - ◆ 목표와 하위 프로그램이 선명한 종합적 농업개발 구상 하에 추진
 - ◆ 공동 조사연구와 협약을 토대로 추진
 - ◆ 다자 간 농업개발협력 방식으로 추진
 - ◆ 공적 개발원조와 민간의 투자사업 병행 추진
- 사례
 - ◆ EU의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 UNDP의 AREP 지원(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4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협력

EU의 SAPARD 프로그램 사례

□ SAPARD 프로그램

- ◆ 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가입 신청국)의 농업·농촌 종합개발사업 이행 지원
- ◆ EU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지원

□ SAPARD 프로그램의 구성

- ◆ 농업경영(정책 I), 가공 및 유통분야(정책 II), 소비자보호와 식품안전 개선(정책 III), SAPARD 관리역량 강화(정책 XIV) 등 15개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 SAPARD 지원과 이행 상의 의무

- ◆ 하위 프로그램 구체화, 공동 재정 부담, 독립적 관리(독립된 SAPARD Agency 설치), 4단계 평가 실시, 협약 체결

※ 지원규모: 루마니아(11억 6,000만 유로), 불가리아(4억 4,400만 유로)

※ 대부분의 국가 6년 기간의 SAPARD 프로그램 이행 중에 EU 가입

4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협력

UNDP의 AREP 지원 사례

□ AREP 프로그램

- ◆ 북한 농업성이 UNDP의 협조로 계획한 중기 농업개발 프로그램
- ◆ 북한이 자금과 물자 지원을 요청하고, UNDP가 지원 논의 라운드테이블 주선

□ AREP 프로그램의 구성

- ◆ 투입재 조달, 농업인프라 복구 및 정비, 비료산업,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 농업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5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요청규모: 1998~00년(3억 4,400만 달러), 2000~02년(2억 5,000만 달러)

※ 지원이 일부만 이루어져 하위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만 실행

※ **AREP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이 SAPARD 프로그램과 비교됨

5 북한 체제전환 이후 농업협력 전망과 준비

□ 전망

- ◆ 시장경제 국가 간 교류협력에 준하여 진행
- ◆ 공적개발협력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 북한지역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준비

- ◆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조응하는 농업정책의 개발·준비 필요

□ 한반도 정세 급변과 남북관계의 대전환 예고

- ◆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

□ 제재 완화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 ◆ 남북 간 협력 환경은 현 수준과 같을 것으로 전망
- ◆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재정비하여 추진
- ◆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KSP(지식경험공유사업) 중점 추진

□ 북한 본격 개혁·개방 단계의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 ◆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농업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 1단계 협력사업 지속 확대 추진
- ◆ EU의 SAPARD 방식(or UNDP의 AREP 지원)의 북한 주도 농업개발 지원 중점 추진